1.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 ☎2133-7505 보건정책팀장 : 이서진 ☎7507 담당 : 김동규 ☎7556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정신재활시설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등**

- 정신재활시설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필요 사회복지시설
- 국고보조시설 중 규모·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정신요양시설 시비 추가지원

○ **(지원기준) 3개월분 난방비 지원하되, 유형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① (정신요양시설) 대규모 시설로 시설 면적에 따라 난방비 차등지원

시설 면적	월별 지원액		해당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 (중략)	
4,500㎡미만	3,500천원	7,000천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4,281m²) 시립 은혜로운 집(3857m²)
5,500㎡미만	4,000천원	8,000천원	
6,500㎡미만	4,500천원	9,000천원	서울정신요양원(5,708m2)
6,500㎡이상	5,000천원	10,000천원	

② (정신재활시설) 소규모 시설로 이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액지원

- (생활시설) 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월 300천원 정액지원
- (이용시설*) 타 사회복지시설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월 600천원 정액지원

*직업재활, 주간재활, 종합재활시설, 정신건강통합센터 등 41개소

③ (노숙인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로 이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액지원

- (생활시설) 생활시설로, 정신재활시설과 동일하게 월 300천원 정액지원

□ 예비비 사용 사유

○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과 계속되는 한파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이용시설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필요

□ 예비비 사용 내역

○ 예비비 사용 승인액 : 총 193,200천원

- (정신요양시설) 〔(7,000천원×2개소)+(9,000천원×1개소)〕 ×3개월 = 69,000천원
- (정신재활시설) 〔(300천원×55개소)+(600천원×41개소)〕 ×3개월 = 123,300천원
- (노숙인 거주시설) 300천원×1개소×3개월 = 900천원

○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23. 2. 10.)

(단위 : 천원)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사용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예산 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02)	20,000,000	-	193,200	19,806,800
정신 건강과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국비)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4,880,388	42,000		4,922,388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1)	3,284,048	27,000		3,311,048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1)	20,773,689	105,300		20,878,989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 시설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1)	3,172,565	3,600		3,176,16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1)	3,510,007	14,400		3,524,407
감염병 관리과	생활보건 관리향상	생활보건 예방관리	결핵관리 -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02)	80,000	900		80,900